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17. 12.)

① 법률, 위임명령에 의한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설치조례 14조, 설치조례 시행규칙 17조, 정관 16조 등에 의거, 해당 직무에 종사한 담당직원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직무이외에 이용금지)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공단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우선주차/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자 및 요청자(신고자) 명단 ◦ 기타민원정보 (☞ 신고자(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④ 재판·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관련 문서(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상황)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협성이 있는 정보 등

⑤ 감사·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중인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등도 포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 관련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임용, 승진, 전보, 복무, 상벌, 급여 등 인사정보 ○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 승진심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 노무관리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간부 명단, 주요활동 사항 등 ○ 제안, 직무발명, 특허관리 등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 등의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유자격자 명부,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 등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⑥ 이름·주민번호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평가기록 ○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 신원조회 회보서 ○ 진정, 탄원, 질의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증거자료, 징계의결요구서, 징계관련 회의록, 비위면직자 인적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

⑦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공단 적용 대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용역수행업체의 기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BSC 핵심성과 측정지표

⑧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없음	